

의안번호	제2868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6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수당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, 방재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청구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 등 규정(안 제8조)
- 나.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사무 정비(안 11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)
 - 보상청구서에 “인감증명서”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나.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없음[복지지원과-38361(2024. 10. 2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525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9. 30. ~ 2024. 10. 2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소집)”을 “(소집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수당(이하 “소집수당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신설되는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지 제6호서식] (개정 2020. 11. 5.) (현 행)

요양 [], 장애 [], 장제 [], 유족 [] 보상청구서(제11조 관련)
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사고자	소속	전화번호
	주소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청구인	주소	전화번호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

사고경위 및 요약	사고(사망)일시	
	사고(사망)장소	
	사고경위	
	1. 화재 [] 2. 구조 [] 3. 구급 [] 4. 기타 []	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

청구금액	요양보상	장해보상
	장제보상	유족보상
	청구금액	

「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단장 : (서명 또는 인)

고성군수 귀하

(뒤쪽)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애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애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애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인감증명서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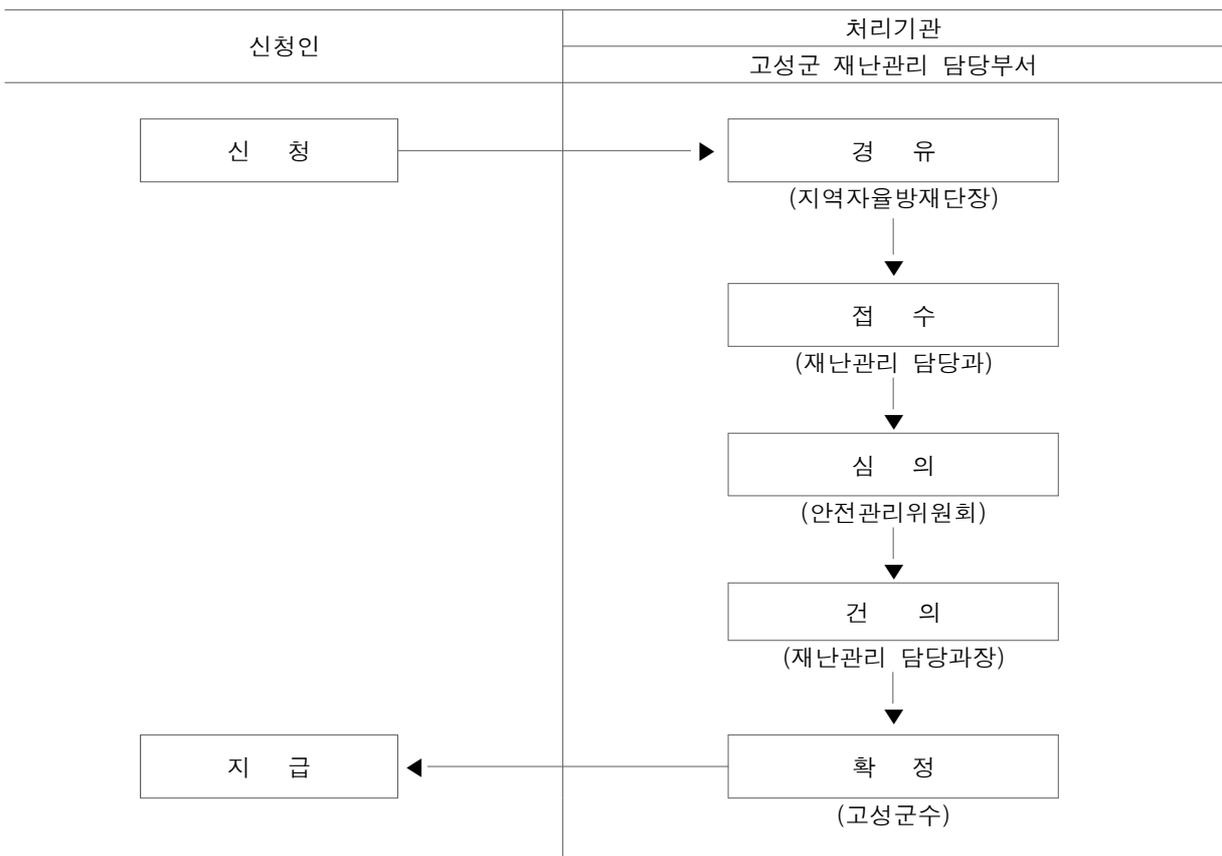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■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4. 00. 00.>

요양 [], 장애 [], 장제 [], 유족 [] 보상청구서(제11조 관련)
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사고자	소속	전화번호	
	주소		
	성명	생년월일	
청구인	주소	전화번호	
	성명	생년월일	
	사고자와관계	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	
	사고(사망)장소		
	사고경위		
	1. 화재 [] 2. 구조 [] 3. 구급 [] 4. 기타 []		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	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	
청구금액	요양보상	장해보상	
	장제보상	유족보상	
	청구금액		

「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단장 : (서명 또는 인)

고성군수 귀하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애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애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애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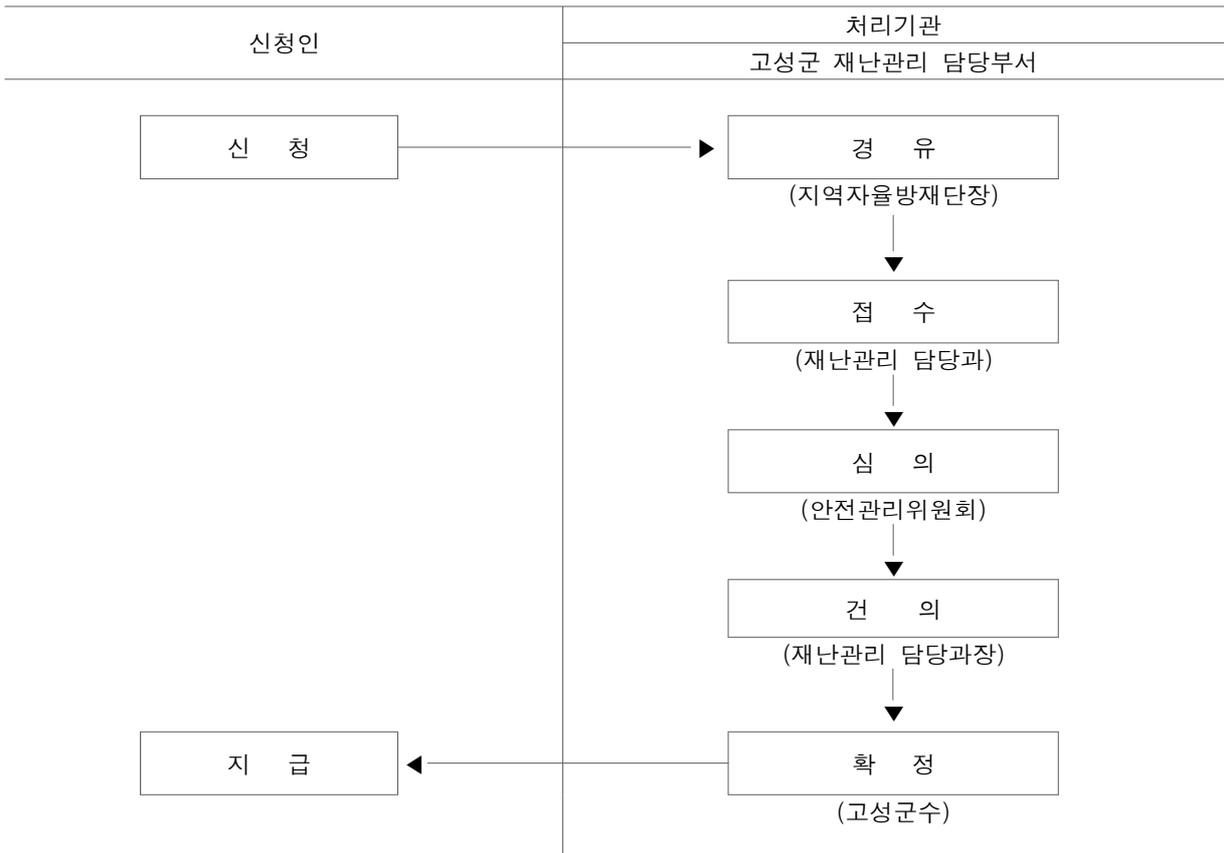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소집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소집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「<u>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</u>」 제61조에 따른 수당(이하 “소집수당”이라 한다)은 「<u>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15조의 <u>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.</u>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,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

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관련 조문: 안 제8조(수당)

나. 비용발생 요인: 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구호활동

다. 소요예산: 4,012천 원

- (소집수당) 10,030원*2시간*50명*4회=4,012천 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의 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 수당지급은 연간 4,012천 원으로 예상되며,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김성영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6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>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16.>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10조(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·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